

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
동의자	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	
	소재지(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) (전화번호:)			
소유권 현 황	토 지 (총필지)	소재지	공유 여부	면적(㎡)
	건 축 물 (종류: <i>상가, 아파트 등</i>)	소재지	허가 유무	동 수
	지 상 권 (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 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)	설 정 토 지		지상권의 내용
	등기상 건축물 지분 (면적 ㎡)		등기상 대지 지분 (면적 ㎡)	
동의내용	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명칭			
	위치			
	면적		㎡	
	※ 동의하는 사항만을 작성하며, 변경된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변경 전·후 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.			

본인은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귀하

첨부서류: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(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, 해당 신분증에 포함 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하여 첨부합니다) 사본 1부
유의사항